

주주님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78 (파장동 19-4) 당사 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및 ㈜코캠 간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 (내용 별첨 1)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9년 월 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78
주식회사 코캠
대표이사 로넨 페이지어(직인생략)

위임장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19년 11월 0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코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위임함.

2019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식수 :
주소 :

▣ 별첨 1

■ 제1호 의안 :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및 (주)코캠 간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

1. 교환방법: 주식회사 코캠 및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2.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회사

가. 회사명 :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나. 대표자 : 로넨 페이어

다. 주요사업 : 인버터/컨버터 도매 등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체

라. 본점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220번길 30-78 (파장동)

마.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3. 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교환비율 :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 (주)코캠 = 1 : 0.0203954

주식교환일 현재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코캠 주주가 소유한 (주)코캠 보통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에 이전되고,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같음하여 주당 현금 6,444원의 주식교환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4. 교환비율 산출근거

주식교환일 현재 (주)코캠 주주가 소유한 (주)코캠 보통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에게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코캠 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같음하여 보통주식 1주당 6,444원의 주식교환 교부금을 현금으로 교부합니다. 교부금 1주당 6,444원은 (1)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가 2018년 10월 17일 기준 (주)코캠의 재무적투자자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보통주의 주당 취득가격과 동일하며, (2)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가 소액주주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29일 ~ 2018년 12월 27일 (1개월간) 진행한 장외매수의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5. 교환목적 : (주)코캠이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의100% 완전 자회사가 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 그룹과의 사업시너지를 창출하여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6. 교환일정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일	2019년 09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19년 10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15일
	종료일	2019년 10월 17일
주식교환 · 이전 반대이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24일
	종료일	2019년 11월 07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9년 11월 08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08일
	종료일	2019년 11월 28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11일
	종료일	2019년 12월 11일
K-OTC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9년 12월 10일 ~ 매매거래 정지 사유 해소 시	
교환 · 이전일자	2019년 12월 12일	
주식교환 교부금 교부예정일	2019년 12월 27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본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주)코캠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코캠(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 6,444원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 및 제374조의2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식교환비용 산정 시 산출된 주식교환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5 제3항 및 제374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코캠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혐의를 위한 (주)코캠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매수 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결정청구에 따라 결정된 금액은 해당 결정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9년 10월 14일) 현재 (주)코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9년 11월 7일)까지 (주)코캠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코캠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코캠 주주 중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코캠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코캠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접수장소

회사명	장소	전화번호	비고
(주)코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78 (파장동)	031-362-0111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다. 청구기간

구분		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08일
	종료일	2019년 11월 28일

4.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대상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해당 기간 중 매각하거나 새로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효력도 상실되어 (주)코감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양식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주

2019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코캠 대표이사 귀하

-----절 취 선-----

(붙임양식 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주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주

2019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코캠 대표이사 귀하